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71회 임시회(2024. 10. 1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 
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복지도시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4-120
----------	--------

2024. 10. 10.  
전문위원 신준호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 : 최은하 의원 외 11명

나. 제 안 일 : 2024. 9. 27.

다. 회 부 일 : 2024. 9. 30.

## 2. 제안이유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 
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4. 9. 23 ~ 2024. 9. 30. (의견 없음)

2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해당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제정 배경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친환경자동차법”이라 한다.) 제11조의3에 따라 위임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경감의 재량권을 규정하고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발생에 따른 안전시설을 해당 사업자가 우선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,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4),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내 충전시설 설치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 등으로 본칙 5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안 제2조 정의의 “전기자동차”는 「친환경자동차법」<sup>1)</sup>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차량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전기충전시설의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만 한정하였음.
- 안 제4조 충전시설 설치·운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이 설

1) 2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.

치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5조 안전시설은 충전시설을 설치한 전용주차구역에 사업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와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# 다. 종합의견

- 「친환경자동차법」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(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)에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지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<sup>2)</sup>,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등과 관련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책무로 규정할 수 없음.
- 다만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반영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따른 사회적 관심 사항을 반영한 안전시설 조항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지방 소방에 관한

2) 제18조의5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)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, 이하 “총주차대수”라 한다)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·보급계획·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사무는 광역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, 최소한의 화재확산 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안전시설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나,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됨.

# [참고 자료]

<표 1. 관내 공공건축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>

연 번	1. 시설현황				2. 충전기 현황		
	시설명	주소	형태	주차 면수	완속	급속	비 고
1	구청종합청사	월드컵로 212	부설	364	16	4	
2	창천공영	백범로1길 56	시설	280	6	1	
3	상암 1	성암로 197	시설	208	2	2	
4	중앙도서관	성산로 128	시설	193	2	2	
5	마포아트센터	대흥로20길 28	부설	155	3		
6	망원1-2	포은로6길 10	시설	148	3		
7	망원나들목A동	망원동 460-5번지 일대	거주자	141		6	
8	염리	큰우물로 61	시설	135		5	
9	양화진	토정로 2	시설	130	4		
10	소금나루도서관	송문길 72	시설	118		8	현대자동차 설치(4대)
11	한 서	송문12길 53	거주자	111	3		
12	연 남	동교로 235-1~동교로 267	노상	74			
13	공덕1-1	효창목길 31	거주자	81	3		
14	동교동	외우산로149-외우산로29길 72	노상	72			
15	망원	희우정로 68~123	노상	70			
16	망원1-1	망원로 28	거주자	68	2		
17	청기와	월드컵로10길 23-잔다리로 133	노상	66			
18	도화	도화길 37	시설	63	2		
19	망원나들목B동	망원동 460-5번지 일대	시설	62	3		
20	망원2-1	망원로3길 24	거주자	62	2		
21	성산2-1	모래내로 31	거주자	59	2		
22	구민체육센터	월드컵로25길 190	부설	57	2		
23	공덕1-2	만리재로14길 39	거주자	56	3		
24	용강	토정로 272~ 319	노상	52		2	
25	각 동주민센터	-	부설	242	17		
26	염리종합사회복지관	대흥로24길 50	시설	43		1	

※ 소금나루도서관에 설치된 충전기 8개 중 4개를 현대자동차에서 설치·운영

<표 2.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현황>

년도	임대료	비고
2022	14,715,000원	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부과금액
2023	14,715,000원	
2024	34,115,000원	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한 금액
2025	7,027,600원(예정)	35,138,000원 부과 예정이나 조례가 시행되면 최대 80% 경감 (※ 경감예상액 28,110,400원)

# [관 계 법 령]

##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)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2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

제8조의2(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7.>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7.>

##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8조의5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)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, 이하 “총주차대수”라 한다)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·보급계획·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